

언론자율규제기구의 전망 -영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원우현
고려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1. 들어가며

슬롯머신사건과 관련, 지난 1993. 5. 18.을 전후해서 법정증인으로 채택된 한 여인이 주요 중앙 일간지들에 의하여 사생활을 침해 당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사건이 벌어졌다. 즉

「언론에 의한 피해가 발생된 것」이다. 일반적으로 언론에 의한 피해발생은 관급기사에 의존하거나, 일반 당사자의 의견만을 취재 보도하거나, 언론의 상업성에 기민한 선정적 보도 또는 경쟁적 보도나 폭로성에 기인한다.

그 피해사례를 유형 별로 분류하면 첫째, 개인, 법인, 단체 등의 명예훼손이나 보호 받아야 할 사생활, 인격권 또는 초상권의 침해, 둘째, 뉴스가치가 있으나 보도통제가 되는

「보도삭제」 또는 「미보도」, 셋째, 선거 및 공안사건과 관련된 기사 중 「불공정보도」와 「왜곡보도」, 넷째, 「업무방해」나 「신용훼손」 등이 해당된다.¹⁾

이번 사건은 피해 당사자인 홍모 여인이 언론을 상대로 아직 구제절차를 앓고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자칫 흐지부지될 수도 있겠으나 우리 언론보도의 「윤리성」에 커다란 문제점이 있음을 내외에 알리는 사례가 되었다.

언론의 윤리성 공방시비는 물론 어제 오늘만의, 그리고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는 구의 남북이나, 양의 동서를 불문하고 시민사회와 근대민주주의의 발전과 더불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즉, 「통제」와 「자유방임」, 「권리」와 「의무」, 「자율」과 「타율」 등 어느 한 쪽이 강조되면 그 반대 쪽이 기울어, 길항작용을 하게 되는 것을 보아왔다.

언론 자유의 신장은 국민의 알 권리의 영역을 넓혀 주었지만, 바로 이러한 알 권리의 충족과정에서 부수적으로 피해를 보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가 생기게 마련이다. 이른바 민주사회에서의 알 권리의 신장이 죄없는 개인이나 단체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여 알 권리와 그 보도의 윤리성이 아킬레스의 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도 이같은 상식적인 개념에서부터 출발하고 있다.

북유럽 몇 개국을 제외하고는 서방사회에서 가장 먼저 민주적인 의회제도를 도입한 영국에서는 최근 언론보도의 책임과 의무에 대하여, 그리고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를 두고 연일 논쟁을 벌이고 있다

즉,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타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 등 사회적 책임을 언론계의 자율적 조치에 맡길 수 없다는 여론이 팽배하게 되었다. 한 마디로, 사회규범과 윤리에 기초한 「언론의 자율적 기능」에 맡길 것이냐, 아니면 이를 법제화한 「타율적 기구」에 맡길 것인가가 주된 논의의 대상인 것이다.

최근의 국내 사건과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윤리와 자율성이 강조되는 요즈음, 자율기능을 갖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나 언론기본법에 의하여 탄생한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상을, 영국의 신문평의회의 해체와 이로 인한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탄생 과정과 기능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율기구의 위상을 돌아보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2. 몸 말

왕실신문위원회의 1, 2, 3 차 권고안

영국에서 는 제 2 차 세 계 대 전 이 후 「왕실신문위원회」의 1949 년 「1 차권고안」에 따라 1953 년에 「신문평의회」(National Press Council)가 발족되었다.²⁾ 신문평의회의 구성원으로 20%는 비언론인으로 하며, 평의회 의장 역시 비언론인으로 하라는 당초 왕실신문위원회의 권고안과는 달리 신문평의회는 업계 인사들만으로 구성되었다. 즉 평의회는 25 명의 신문계 인사로 구성되었는데 지역성과 전문성을 대표하는 8 개 집단의 인사로 구성되었다. 즉 전국신문편집인협회 대표 3 명, 지역신문편집인협회 대표 5 명, 전국기자연행 대표 3 명, 전국기자협회 대표 4 명, 전국지 발행인협회 대표 4 명, 지역신문협회 대표 4 명, 스코틀랜드 일간지협회 및 스코틀랜드 일간신문 발행인협회 대표 각 1 인 등 총 25 명으로 구성되었고, 임기 3 년에 연임가능하고, 결원시 당해위원 소속단체에서 충원토록 하였다.

그런데 1960 년 10 월의 일련의 신문통폐합과 창·폐간 사건 등 언론집중(집중)현상이 발생, 언론계 구조가 일부 변화하는 등 문제의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하원은 1960 년 12 월 제 2 차 왕실신문위원회 설치안을 의결, 진상조사를 목적으로 쇼 크로스경을 위원장으로 하는 「제 2 차 왕실신문위원회」를 구성, 5 명의 위원과 함께 임명하였다.

제 2 차 왕실신문위원회는 언론의 독과점 방지등 언론집중문제가 부각되자, 「신문평의회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며, 운영자금을 언론계에서 부담하지 않을 경우 법에 의한 기구를 설치하여 조치하겠다」고 으름장을 놓은 뒤 만약 일정 기간내에 자율적으로 신문평의회가 개편작업을 서두르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안을 입법하겠다고 하였다.

이같은 왕실신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언론계는 비언론인의 평의회 의장직과 공중 대표성을 인정하는 평의회 대표선임권(비언론인의 지분을)을 수락, 신문평의회 규정을 제정(1961), 1963 년 7 월 1 일 이를 채택하였다

개편된 신문평의회는 5 개 발행인 단체 및 협회와 3 개 기자단체를 망라하여 총 8 개 단체 언론계 인사 20 명과 비언론인 대표 5 명으로 구성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평의회는 연 5 회 이상 개최하며, 그 외에 의장 요구시 또는 평의원 8 명 이상의 요청이 있을 시에는 특별회의를 소집 할 수 있도록 상설화하고 경비는 평의원 선임 단체의 분담금으로 충당하도록 하였다.

신문평의회는 2 개의 상임위원회를 중심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즉, 총무위원회와 제소처리 위원회가 그것인데 총무위원회는 검열, 법정모욕, 명예훼손 등 법률문제와 언론산업의 독과점과 같은 언론집중의 문제 등 과거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사태를 다루고, 제소처리위원회는 신문활동에 관한 일반의 호소 및 불만처리를 다루도록 하였다.

이 두 개의 상임위원회는 신문평의회에 대하여 권고형식을 취한다. 제소처리위원회는 제소인과 신문 쌍방의 제출서류로써 사안조사에 나서며, 의견이 상반될 경우 관계자의 출두와 구두증언을 청취한다. 만약 제소사건의 책임이 편집국장 혹은 기자에게 있다는 제소위원회의 결론이 나면 사무국은 심의요지를 신문평의회 위원들에게 회부하여 검토케 한다. 이어 소집된 신문평의회는 제소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르거나 혹은 일부수정, 또는 결정이 나지않아 표결에 붙이는 경우가 발생한다. 이렇게 결정된 사안의 내용과 권고사항은 지상에 발표된다. 그러나 신문평의회는 사법적, 또는 준사법적 강제기관이 아니었고, 평의회에 가입한 언론단체들의 비협조로 인하여 다음의 사항을 소속단체들에게 권고하게 되었다. 즉, 언론에 의하여 피해를 받은자(이하 피해자)는 당해 언론사에 정정보도를 요구하여 조치토록 하거나, 둘째 피해자가 만족할 만한 성과가 없을 경우 제소위원회에 제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신문평의회는 제소접수 예외규정을 마련하였는데, 그 내용은 피해자가 신문평의회에 제소하기 전에 법원에 제소하였거나, 제소할 염려가 있는 안건에 대해서는 접수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나 이같은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속단체인 업계에서는 소극적 태도 내지는 반발을 하고 나섬으로써 자율기구인 신문평의회의 기능과 역할에 많은 의구심이 일게 되었다. 1977 년의 「제 3 차 왕실신문위원회」(위원장 맥그리거)의 대 신문평의회에 대한 권고안은 「준용원칙 또는 실천강령을 입안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의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렇게 자율기구로서의 신문평의회는 제소건의 처리에 있어 적용할 확고한 윤리준칙 마련을 도외시한 채 자의적인 평결을 계속하자 영국 행정부는 신문평의회를 해체하고 이를 대체할 「기구」를 탄생시키게 되는 것이다.

신문평의회의 해체와 캘커트위원회의 탄생

이같이 자율기구로서의 신문평의회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윤리성이 문제시되자 국민이나 의회 및 심지어는 언론 종사자들마저 불만이 고조되었고, 급기야 1989 년 4 월에는 신문평의회를 대체할 한시적 기구인 「프라이버시 및 관련문제 위원회」(Committee on Privacy & Related Matters) -통상 위원장의 이름을 따서 캘커트위원회라 함-의 구성이 발표되었고, 이에 따라 언론의 자율규제가 아닌 「타율규제」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이에 따라 뒤늦게나마 신문평의회 산하 단체중의 하나인 전국신문발행인협회(NPA)가 스웨덴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오고 있던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주장하는 일방, 자율실천 행동요강 및 선언서를 채택하여, 사생활 보호, 반론기회 부여, 신속한 정정보도 및 정당한 방법에 의한 정보수집 등을 발표하는 등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였다.

이 같은 전국신문발행인협회(NPA)의 5 대 강령 발표에 즈음하여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신문평의회는 1989 년 12 월에 전국신문발행인협회(NPA)의 5 대 강령을 포함한 19 개항의 실천강령을 채택하였는데, 여기에는 위장취재, 강간피해자취급, 사진사용, 환자 및 병원 입원자의 취재, 성범죄 및 미성년자보도, 비탄의 저널리즘 이용 등에 관한 불가사항과 금기규정의 도입, 정보원 비닉의무 등도 포함시키게 되었다.

캘커트위원회의 신문평의회 해체 건의

영국정부의 한시적 언론자문기구인 캘커트위원회의 보고서가 1990년 6월에 제출되자 신문평의회는 자율기구로서의 기능을 상실, 그 존재의의를 잃게 된다. 캘커트위원회 보고서의 주요내용에는 한시적 「언론불만처리위원회」(press Complaints Commission)를 신설하여 신문평의회를 대체하고, 이를 위한 법률은 정부입안으로 추진하되,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준사법적 기관으로 강화하여 저널리스트나 카메라맨이 허가 없이 사유지에 침입하여 취재 보도할 경우 형사법으로 처리하며, 피해자의 신원 비닉권을 재판관에게 부여하고, 특히 성범죄의 피해자에 대하여는 절대적인 신원 비닉권을 준다는 것이다.

따라서 1949년 1차 왕실신문위원회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외부인사를 배제하고 순수 언론계 인사로 구성 출범한 신문평의회는(1953) 설립당시의 「자율규제기구」로서의 역할을 마감하고(1990), 자율규제권을 언론불만처리위원회에 넘겨주게 된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출범

캘커트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신문평의회는 「자진해체」하고, 「자율적」으로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발족시켰다(1991. 1. 1). 초대 위원장에는 제3차 왕실신문위원회 위원장이던 맥그리거경을 임명하고 언론사 대표 9명을 포함한 16명의 위원으로 구성을 마쳤다. 연간 예산은 1991년도 약 150만 파운드(한화 22억원), 1992년도 2백만 파운드(한화 약 30억원) 정도로 재정은 관련 6개 단체(신문, 잡지, 지역신문 등)가 회원사가 되어 언론기준재정국(Press Standards Board of Finance)을 설립, 필요경비를 충당하고 있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처리절차는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의 그것과 흡사하다. 즉, 피해자가 문제기사의 사본을 첨부, 위원회에 신청하면 위원회는 해당 언론사에 송부하여 조치토록 한다. 만약 신속한 처리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위원회가 조사권을 발동한다. 위원회의 사무국장은 재정을 위원회에 제출하고, 위원회는 재정을 하여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이때 위원회의 중재에 의해 양방간의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만 재정을 내린다. 구 신문평의회 「당사자 청문회」는 개최하지 아니한다.

어차피 1년 반의 한시적 기구로 운영될 「과도적 자율기구」인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기능시한만료일인 1992년 6월에 캘커트위원회에 의해 새로운 검토를 위한 6개월간의 자율적 규제 기한연장을 부여받는다. 18개월간의 실적평가로 자율적 기구에서 타율적 사법기관(법정규제기구)으로 그 성격이 변할지도 모르는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연장기간 중, 왕실 사생 활 보도와 각료의 스캔들 보도에 대한 대책 마련을 캘커트위원회에 의뢰하였다. 이 일련의 사건은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향후 진로를 가늠할 첫번째 척도가 되었다. 영국왕실에 대한 즉시성 보도와 관련(데일리 미러지가 앤드류 왕자 부인인 사라비와 미국 실업인인 조니 브라이언과의 포옹장면 서면 108건, 선지가 다이애나 왕세자비와 전화를 한 남자와의 내용을 도청한 테이프 공개 14건 계 122건), 서면불만 122건에 전화불만

127 건이 접수되어(물론 당사자의 불만은 접수되지 아니함) 향후 사생활에 관한 한 제 3 자로부터는 불만을 받지 않기로 하였다. 구체적 내용은 사례를 통하여 알아본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역할에 여론이 부정적으로 돌아 1992 년 말 노동당 솔레이 의원이 언론의 자유와 책임에 관한 법률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보수당과 노동당의 지지를 받았는데 골자는 법적 독립규제기구를 만들어 윤리기준 및 뉴스보도의 정확한 표현과 조사 등을 명기하고, 독립된 규제기구는 정정보도를 명할 수 있고, 불복시 고등법원에 이첩 한다는 내용이었다.

또한 언론불만처리위원회 탄생의 산파역할을 했던 캘커토티위원회는 「자율규제실패 결론보고서」를 제출하였다(1993 년 1 월 10 일). 당초 캘커토티위원회는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한시기구로 권고안을 내놓았고,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시험대에 오른 1 차 자율기구이었고, 자율기구로서의 실적이 미비할 경우 법정규제기구인 「언론불만처리심판소」(가칭)를 그 대안으로 제안했었다.

1 월 10 일자의 「자율규제실패 결론보고서」에는 정부가 임명한 법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언론불만처리심판소」의 설치를 제의 하고 그 역 할은 보도강령제정, 보도강령을 위반한 취재내용의 공표금지, 사죄명령권 및 정정보명령권 부여, 벌금 또는 배상금의 지불명령권을 부여토록 하며, 언론의 도청행위나 망원렌즈를 이용한 사생활 촬영금지에 관한 입법과 언론의 보도내용을 금지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토록 건의하였다.

이에 따라 영국언론들은 캘커토티위원회의 보고서 내용에 반발, 이는 언론검열에 해당하며 언론자유를 위협하는 중대 사안이라는 여론을 형성하고 있으며, 이해 당사자간의 공방이 치열하게 전개되고 있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연차보고서(1992.5.15)³⁾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1 년간 실적을 평가하는 연차보고서에서는 총 1,396 건의 불만이 접수되었다 이 중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명백한 강령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한 519 건은 반려되었다. 이는 「광고기준심사기구」등과 같은 다른 기관으로 이첩된 것이다. 이같이 반려된 건수가 차지하는 백분율은 37.2%로 유관기구인 광고기준심사기구의 38%, 방송기준평의회의 44%와 비슷하거나 약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이한 것은 우리나라의 언론중재위원회의 중재절차와 달리 제 3 자의 불만을 접수하였다는 것이다. 제 3 자의 불만은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재량하에 접수되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때까지의 강령해석의 범위 내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련된 문제를 제기할 경우에만 한한다는 것이다.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기본적인 처리목표는 물론 「불만이 해당 언론사에 신속히 전달되어 자기문제처럼 처리되도록 한다는 점이다.」 이는 캘커토티위원회가 권고안으로 내놓았던 「핫-라인(Hot-Line)」 제도를 의미한다. 핫-라인이란 이해 당사자와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언론 3 자간의 공조체계를 유지하는 것으로서 이는 예상 피해자가 특정 신문이 자신의 사생활을 침해하려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에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당사자가 이를 언론불만처리위원회에 통보하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지체없이 해당 신문사에 알려 선처를 구하는 제도를 말한다.

물론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피해자(불만신청인)와 편집책임자간의 화해를 위해 최선을 다하여 정식 재정의 필요가 없도록 조치함은 물론이다. 이같은 방법으로 1991 년도에 화해 조치된 건수는 전체의 1/4 이상, 심리절차를 밟은 불만의 2/3 정도가 처리되었다. 이를 근거로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편집책임자가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있는 유력한 증거」로 삼고 있으며, 나아가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활동에 모든 편집자가 호의적이라는 판단을 하며, 원만한 화해로 조치되는 불만 건수가 매년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발행형태별 불만건수에서는 총건수 1,396 건 중 695 건이 전국지에서 발생 49.8%로 집계되었고, 지방지는 534 건으로 38.3%를 차지하여, 전국지에서 특히 불만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전국일간지가 493 건으로 전체의 35.3%로 나타나 「요주의 대상」임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출범 원년의 실적을 심리함에 있어서 불만에 대한 모든 관계자를 공평하고도 균형있게, 그리고 신속히 처리하여야 하는 과제에 시달리고 있으며, 신문평의회시절에 경험하지 못하였던 많은 분량의 신문을 내용분석하여야 한다는 부담도 안게 되었다. 결론으로 맥그리거위원장은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연차보고서의 서두에서 밝히고 있다.

이와 더불어, 언론불만처리위원회는 1991 년 4 월 정관개정을 통하여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목적에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를 포함하여 일반에게 확립되어있는 자유를 지키며 정부와 그 밖의 모든 부당한 외압으로부터 언론을 지킨다」는 내용을 첨가하였다.

3. 나오면서

언론의 자율규제기구인 언론의 사회적 책임을 언론인 스스로가 지키려고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선언적 강령의 채택만으로는 자율규제기구의 존속은 항상 위협을 받는다. 영국은 왕실신문위원회나 캘커트위원회에 의하여 신문평의회나 이를 대체한 언론불만처리위원회가 탄생 하였으며, 「언론불만처리심판소」(가칭)가 이를 대체하게 될 지도 모른다. 우리의 경우는 이미 공식적으로 「자율」 「타율」이 바탕이 된 한국신문윤리위원회와 언론중재위원회가 본연의 책무를 점차 감당해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록 현재까지 구제절차를 밟지는 않고 있지만 홍여민 사건같은 경우가 계속 발생한다. 영국에서는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접수건수가 적다고는 하지만 1991 년도에 1,396 건이 접수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81 년부터 1992 년까지 언론중재 신청건수가 총 1,310 건 4)에 지나지 않는다. 12 년간의 중재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사실이나, 단 한건의 피해발생도 당사자에게는 치명적인 것이다.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처리건수는 연차보고서에 따르면 앞으로 적어질 전망이다. 의회나 정부 또는 여론의 비난에 「신속히」 대응했던 영국의 신문평의회 산하 단체(후에 언론불만처리위원회) 중의 하나인 전국신문발행인협회(NPA)가 스웨덴에서 오래 전부터 실시되어오고 있던 옴부즈맨제도의 도입을 주장, 실시하고 있음은 자율규제기구의 존재와는 상관없이 자체적으로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다.

또한 영국에는 새로운 법정자율기구로의 전환을 반대하는 노동조합과 이해를 달리하는 이익집단의 로비가 앞으로 언론불만처리위원회의 위상을 가름할 것이다. 현재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완벽한 자율기구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 타율에 의한 법정기구로 바꿀 것이냐는 전적으로 영국인들이 처리해야 할 문제이다.

영국 언론인들도 과거 그들이 채택한 각종 윤리강령이나 선언서의 내용을 검토해야 한다.

이미 프랑스에서는 1918년 기자헌장을 채택하여 언론인들의 윤리교과서로 사용하고 있다.⁵⁾ 전후, 구주공동체(EC)를 결성한 뒤 유럽의 언론인 및 언론단체들은 1971년

「언론인의 의무와 권리선언」을 골자로 한 뮌헨헌장이라는 윤리강령을 채택한 바 있다.

자율과 타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뮌헨헌장은 프랑스에서는 언론 노사단체 협약의 전문(前文)에 삽입하여 항시 언론 경영인이나 언론인 일반 모두가 숙지하여 생활화 하고 있음을 배워야 한다. 노동조합이 발달한 영국에서 노사간에 근로조건 향상이나 임금협상도 중요하지만 먼저 사회적 윤리와 책임을 다하는 프랑스의 교훈도 상기해야만 한다

결국 자율기구의 문제해결에는 크게 언론계 내부와 언론계 외부, 정부와 의회, 개인이나 사회 모두가 해결주체임은 틀림이 없다. 우선 언론계 내부에서는 생각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는, 옴부즈맨제도의 전면실시, 언론노사간의 합의와 언론사간의 협약을 현실성 있고 보다 명실상부하게 하여, 이미 프랑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윤리강령이나 헌장을

언론인들의 교과서로 사용」하거나 또는 채용조건으로 삼는다거나, 자율기구로서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고, 보다 근본적이며 장기적인 안목에서 예비 언론인의 윤리 교육 -즉, 요람에서 무덤까지의 사회교육 및 윤리교육의 실시-

-을 강화하며 교육기관과의 협약을 통하여,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시민의식을 함양하고, 심지어는 대학교육과정에서는 예비 언론인으로서의 자질을 위한

언론의 윤리과목을 필수로 하여, 이른바 기본교육과 재교육을 위탁제로 실시 하는 방안⁶⁾도 고려 할 수 있다.

현재 영국 언론계에서는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더욱 활성화 시키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

왜냐하면 타율보다는 자율이 언론의 덕목이기 때문이다. 사족이지만 언론불만처리위원회를 지키려는 영국 언론인들은 「신사도」는 이튼스쿨에서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예비언론인이나 현업에 종사하는 언론인들에게 가장 시급한 윤리과목의 핵심임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를 간과하면 타율규제기구에 의해, 40년간 지켜온 자율기구가 대체될

운명에 놓여있기 때문이다. 어느 때보다도 언론의 사회적 책임이 중요시되는 이 시대에

수용자 통제를 기반으로 하는 자율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국민-정부-언론 모두가 인식의 전환을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⁷⁾

김동철(1987), 「자유언론법제연구」, 서울 : 나남, 1987,

김지운(1986), 「신문윤리위원회의 비교연구」, 서울:성대출판사, 1986

김지운(1987), "세계의 신문윤리", 「언론인의 직업윤리」,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87,

언론연구원총서 4

김지운(1992), "영국신문평의회 해체와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전도", 「신문과 방송」, 92. 4,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pp.32~36

김지운(1993), "신문윤리위원회의 현황과 전망 : 영국 및 독일신문평의회 중심으로", 「언론과 커뮤니케이션의 제문제·김동철 교수 정년퇴임기념논문집」, 서울 : 나남, 1993

박승서(1988), "보도와 인권", 「자율경쟁시대의 언론」,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88, 언론연구원 총서 6

박용상(1982), 「언론의 자유와 공적 과업」, 서울 : 교보문고, 1982

박용상(1988), 「방송법제론」, 서울 : 교보문고, 1988

박종수(1991), "언론보도와 윤리강령", 「언론윤리강령과 보도기준」,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91, 연구서 14, pp.5~81

박종수(1991), "언론보도와 객관성", 「언론윤리강령과 보도기준」, 서울:한국언론연구원, 1991, 연구서 14, pp.85~219

서정우, 차배근, 최창섭(1978), 「언론통제이론」, 서울 : 법문사, 1989

안상운(1992), "우리나라 언론피해구제제도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언론윤리 법제분과 제 3 차 발표문」, 1992

엄기형 (1982), 「신문윤리론」, 서울 : 일지사, 1985

원우현역(1983), 「자유언론의 테크놀로지」, 서울 : 전예원, 1986

유일상(1987), 「공정보도의 사회윤리학」, 서울 : 일월서각, 1988

유일상(1991), 「언론윤리법제론」, 서울 : 아침, 1991

이혜복(1991), "언론조직의 시스템 환경", 「언론윤리강령과 보도기준」,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91, 연구서 14, pp.223~249

임근수(1967), 「신문발달사」, 서울 : 정음사, 1988

임동환(1990), "프랑스편", 「기자채용제도와 연수제도」,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90, 언론연구원 총서 3

임동환(1991), "외국의 언론연구기관(프랑스)," 「신문과 방송」, 91/6. 서울: 한국언론연구원

임동환역(1992), 「프랑스방송법」, 서울 방송위원회, 1992

정연우(1991), "언론과 공정보도", 「언론윤리강령과 보도기준」,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91, 연구서 14, pp.251~268

팽원순(1984), 「매스커뮤니케이션 법제이론」, 서울 : 법문사, 1988

팽원순(1987), "신문법제와 자율규제", 「세계의 신문」,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87, 언론연구원 총서 2

팽원순(1987), "보도와 기자윤리", 「언론인의 직업윤리」, 서울 : 한국언론연구원, 1987, 언론연구원 총서 4

팽원순(1989), 「언론법제신문」, 서울 : 나남, 1989, 나남신서 117

한병구(1987), 「언론법제이론」, 서울 : 나남, 1987

한병구(1990), 「언론법제통론」, 서울 나남, 1990, 나남신서 127

방송제도연구위원회(1990), 「방송제도연구보고서」, 서울 : 방송제도연구위원회, 1990. 4

방송위원회 (1989), "프랑스편", 「외국방송법제자료집」, 서울 : 방송위원회, 1989. 1

「언론중재」, 1991, 봄호

「언론중재」, 1992, 가을호

「언론중재」, 1992, 겨울호

田島泰彦, "현대영국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상)", 「신문연구」, 91/1, No 474, pp.56~61(일문), "현대영국 언론의 자유와 프라이버시(하)" 「신문연구」, 91/2, No 75, pp.85~89(일문)

古川俊實, "영국의 신문고충처리위원회 발족에서 1년", 「신문연구」, 92/3, No 488, pp.86~88(일문)

齋藤 仁,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 활동", 「언론중재」, 1992, 겨울, pp.50~55

「UK Press Gazette」, 1992, 3/16, 36면, 1992, 5/4, 33, 1992, 5/18, 3면, 1992, 5/25, 2면, 1992, 5/1, 3면, 1992, 6/15, 1면, 1992, 7/13, 3면, 1992, 8/3, 5면, 1993, 1/18, 1면, 1993, 2/1, 5면, 1993, 2/18, 2면, 1993, 3/29, & 2면, 1993, 4/26, 2면

주

1) 안상운(1992), 「우리나라 언론피해구제제도」 판례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언론윤리법제분과 제3차 발표문, 1992

2) 김지운(1992, 1993), 제등인(1992)

3) 齋藤 仁, "영국의 언론불만처리위원회 활동", 「언론중재」, 1992, 겨울, pp.50~55

4) 「언론중재」, 1993년 봄호

5) 임동환(1990), p.334

6) 임동환(1990)참조

7) 저자 뒤의 괄호 속의 연도는 초판이며, 실제 인용 또는 참고한 문헌은 출판사 뒤에 명기한 연도의 판본을 의미한다. 또한 본 연구에 직접 인용하지는 않았어도, 보도윤리와 책임등에 관하여 참고한 문헌을 삽입하였다. 그러나 본 참고문헌이 완벽한 것은 아님을 밝힌다.

- 서울대학교 법학과, 미국 보스턴대학교 대학원(신문학 박사)

- 미국 하버드대 연경학회 객원교수, 한국언론학회 회장

- 저술 : 「유언비어론」, 「현대미디어 이론」 외

- 현재 고려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